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6. 18 선고 2023나410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6. 18 선고 2023나41032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5. 30 선고 2022가단13603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5. 21.

판결선고 2024. 6. 18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5. 30. 선고 2022가단136031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■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20. 11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,372,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,372,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■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.

○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‘서울 노원구 F, H동 I호’로 이 사건 소장부분 등을 발송하였고, 피고는 2022. 10. 11.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부분 등을 직접 송달받았다.

○ 이후 피고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2023. 5. 1. 피고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,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송달하여 2023. 5. 15. 송달간주되었다.

○ 제1심 법원은 2023. 5. 30.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, 2023. 6. 1. 피고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, 2023. 6. 26.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위 판결정본이 2023. 7. 11.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.

○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2023. 10. 25.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.

나. 관련 법리

제1심의 중국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고(민사소송법 제396조),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(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).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‘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’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,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,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,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,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(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48276 판결 등 참조).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다44730 판결, 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).

다. 판단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,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,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,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. 그럼에도 피고는 2022. 10. 11. 이 사건 소장부분 등을 직접 송달받은 이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23. 5. 30.까지 7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채

방치하였고, 제1심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이 훨씬 지난 이후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상윤, 판사 노호성, 판사 황기선

별지

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동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노원구

철근콘크리트벽식조스라브 지붕

15층 아파트

1층 1236.20㎡

2층 1430.58㎡

3층 1430.58㎡

4층 1430.58㎡

5층 1430.58㎡

6층 1430.58㎡

7층 1430.58㎡

8층 1430.58㎡

9층 1430.58㎡

10층 1221.34㎡

11층 1221.34㎡

12층 1221.34㎡

13층 773.24㎡

14층 773.24㎡

15층 773.24㎡

지하층 1261.62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11층 조

철근콘크리트 벽식조

60.50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서울특별시 노원구

대 29071.4㎡

2. 서울특별시 노원구

대 51209.6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80281분의 44.62

